

수원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20나6055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평

담당변호사 심규홍, 조재현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송

담당변호사 윤호석

변 론 종 결 2021. 4. 28.

판 결 선 고 2021. 6. 9.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2. 14. 선고 2019가단64092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16. 8. 29.자 5,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6. 9. 13.자 4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5. 내지 7.경 ‘신안군 소재 임야 1,500평을 평당 5만 원에 사면 분할등기를 해주겠다.’라는 등의 C의 말에 속아 2016. 7. 8.부터 2016. 8. 10. 사이에 C에게 7,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6. 8.초경 ‘신안에 섬을 사려는데 돈을 주면 잔금으로 쓰고 땅을 이전해주거나 돈으로 정산해주겠다.’라는 등의 C의 말에 속아 2016. 8. 10. C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나. C은 2018. 11. 28. 위와 같이 원고를 속여 돈을 편취한 범죄 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C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1633, 3635(병합) 및 수원지방법원 2018노8102].

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위 편취금 1억 2,500만 원 중 일부 반환받은 돈을 공제한 60,237,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단54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9. 3. 28. C에게 위 편취금 중 반환한 74,763,000원을 공제한 50,237,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C의 남편인 피고는 2016. 9. 12.경 D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5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대금 중 500만 원이 2016. 8. 29.에, 4,000만 원이 2016. 9. 13.에 각각 C 명의의 G은행 계좌에서 D의 계좌로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가 C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을 형사 고소한 2018. 1. 16.경 위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도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을 넘겨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

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 16. C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나아가 당시 원고가 C의 이 사건 송금행위를 알았다거나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가 C에게 2016. 7. 8.부터 2016. 8. 10.까지 합계 1억 2,500만 원을 편취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C에 대한 위와 같은 1억 2,5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송금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갑 제5,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C이 원고에게 편취금의 일부를 반환하기 시작한 시점은 이 사건 송금행위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송금행위의 성격에 관하여,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평소 자신이 C에게 미리 송금해둔 돈을 C이 피고의 지시에 따라 D에게 전달한 것일 뿐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룬다¹⁾.

나) 판단

(1)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 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의 취지 참조). 그리고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단독으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점, ② C이 이 사건 송금행위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에 따른 이익은 위와 같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C과 피고는 2016. 7. 21. 재혼하였다가 2018. 7. 26. 이혼하였다), ③ 피고가 이 사건 송금행위 전후로 C에게 부정기적으로 돈을 송금(위와 같이 재혼하기 전부터 송금하였다)한 사실은 인정되나, 반대로 C이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기도 하였는바, 피고가 C에게 송금했던 돈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해 맡겨 둔 것이라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④ 피고는, 자신이 C에게 2016. 9. 10. 700만 원, 같은 달 12. 430만 원을, 아들 H가 C에게 2019. 9. 13.

2,590만 원을 각 입금하였고, C이 위 돈을 그대로 매도인 D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일자 이전에도 피고나 H가 C에게 송금한 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바, 위와 같은 거래내역만으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⑤ 피고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C이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매도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할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고, 이에 대한 피고의 납득할만한 설명도 없는 점, ⑥ 피고와 C이 부부관계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스스로 'C이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알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피고의 2020. 7. 31.자 항소이유서 제7면 참조) 재혼 이전부터 C에게 계속하여 돈을 송금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C에게 송금해야 할 원인이 있었고 송금된 돈은 C의 단독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송금행위는 C이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을 피고 대신 지급하여 그 이익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점에 관해 C과 피고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C의 채무초과 상태 및 사해행위의 성립

가) 적극재산의 산정

(1) 갑 제5, 10 내지 1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I은행, G은행, 아이비케이기업은행, J은행, K은행, L은행, M단체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송금행위일을 기준으로 C의 G은행 예금계좌에 2016. 8. 29.에는 10,489,686원, 2016. 9. 13.에는 42,412,230원의 예금이 있었고, 달리 C 소유의 예금채권이나 부동산은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C의 적극재산은 G은행에 대한 위 각 예금 채권 상당액이다.

(2) 한편 피고는, C이 이 사건 송금행위를 할 무렵 N에 대하여 244,037,225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었으므로 이는 C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이 N을 상대로 '2012. 6. 1.경부터 2016. 8. 30.까지 수시로 돈을 차용한 뒤 변제하는 과정에서 실제 C의 채무보다 341,851,652원을 과다하게 변제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합8869), 위 법원은 2018. 5. 31. C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N에게 244,037,2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인정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바(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1140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17,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C은 2016. 10. 28.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N은 자신에게 반환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6회의 변론기일 및 1회의 조정기일 등을 거쳐 2018. 5. 31.에 이르러서야 C의 청구 중 일부가 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된 점, ② 위 판결선고 이후 C은 2018. 6. 8. 위 판결의 집행문을, 2020. 3. 2. 위 판결의 확정증명을 각 발급받았으나 이후 N으로부터 위 판결에서 인정받은 채권 중 일부라도 지급받았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③ 원고와 O(C의 다른 채권자)이 각 C의 N에 대한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N에게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가 2021. 2. 내지 3.경 송달되었음에도 N은 그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합8869 판결에서 인정된 C의 N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채권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C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C이 원고에게 1억 2,500만 원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C의 다른 채무의 존부 및 액수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위 송금행위 당시 C의 소극재산(위 1억 2,500만 원의 채무)이 앞서 본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음은 계산상 명백하고, 한편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므로(앞서 본 대법원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송금행위는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사해행위가 된다.

3) 사해의사의 존재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는 악의로 추정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의 증여행위로 적극재산이 감소하여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송금행위에 관한 C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C이 원고 등을 속여 돈을 편취한 사실 및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위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몰랐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섣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C은 2016. 8.경 당시 사채 등을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고 있던 상황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

고, 원고로부터 받은 돈도 개인 차용금 변제 및 아파트 매입 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점, 당시 피고는 C과 과거 이혼했다가 다시 결혼한 법률상 부부관계였고 서로 돈을 자주 주고받기도 하는 등 생활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본 약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송금행위, 즉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16. 8. 29.자 500만 원의 증여계약 및 2016. 9. 13.자 4,000만 원의 증여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C을 상대로 한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채권의 원금 50,237,000원만²⁾으로 위 각 증여금액의 합계인 4,5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각 증여계약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취소채권자는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금전이나 동산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인 피고는 취소채권자인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욱, 판사 남기정, 판사 김태형

1) 피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1심에서는 명백히 다투지 않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은 취지로 다투고 있다.

2) 위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C의 원고에 대한 편취금 중 C이 사후에 반환한 돈을 공제한
금액